Chapter 2

소득

02

01 자립수당

02 자립정착금

03 디딤씨앗통장(CDA)

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05 장애 연금·수당

01 자립수당

●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 미포함)

구분	내용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 - 2021. 8월부터 적용(단, 2018.8.1. 보호종료된 자부터 가능) - '18.8월 이후 이미 자립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추가 신청 불필요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단,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리 신청) ② 우편 및 팩스 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수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신청서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통해 다운 가능)	① 필수 제출서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보호종료자 대상 사이버교육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 - 온라인교육 - 기관별 맞춤형 교육 - 아동자립교육 - (필수)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수강 후 이수증 출력 ②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시스템 상 보호종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 담당 공무원이 요청 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개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고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예시

(앞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1. 신청인

대상아동	성 명	김자립	E-mail	jarip@ncrc.or.kr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021225-4123125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7층			연락처	전화 : 1522-1823 휴대전화010-0000-0000
	계좌번호	우리은행 123-156-789220 (예금주: 김자립)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압류방지통장 여부 [ ] 네 [√] 아니오				

대리인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 메시지 [ ] 기타( )				

2. 보호기관

보호기관명*	oo보육원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605-82-00000
대표자명 (위탁부모)	이△△	연락처	전화 : 02-0000-0000 휴대전화 : 010-0000-0000
보호기관(위탁가정) 주소	서울시 중구 000 000		
E-mail	oooo@oooo.com	보호구분	[√] 아동양육시설 [ ] 공동생활가정 [ ] 아동일시보호시설 [ ] 아동보호치료시설 [ ] 가정위탁 [ ] 기타
보호구분 기타사유			

* 보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는 최종 보호종료된 아동복지법 상 시설 기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만 작성)

3.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연락처, 주민등록정보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별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
위와 같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김자립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자립수당 대상자 인터뷰

△
대학 휴학생

▲
대학원생

1. 자립수당을 알게 된 경로는?

△ 양육시설 원장님에게 직접 연락이 와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가정위탁 보호종료 시 가정위탁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때 자립수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2. 자립수당 지급을 통해 도움 된 점은?

△ 대학 휴학생은 수급비가 끊기는데 수급비 대신 자립수당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 대학원생이다 보니 소득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립수당으로 인해 교통비와 식비가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 자립수당 주사용처는?

△ ▲ 주로 교통비와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4. 자립수당 관련 선배들의 팁

△ 수급비를 받는 경우, 수급비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자립수당은 저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우대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단기간에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례)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여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360만원에 1,080만원을 추가하여 총 1,44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음

▲ 당장 필요한 것에 급급해서 쓰기보다는 본인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생활비로 사용하더라도 학교 교재를 사는 등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02 자립정착금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가 되면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은 주거안정을 위한 '종잣돈'이자 불특정한 미래를 위한 '비상금'이며, 자립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자립정착금 실제 사용내역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자립정착금 지원개요

구분	내용
대상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지원내용	▶ 1인당 500~2,500만원(지역별 금액 부록 참고) ※ 자립정착금은 자지체에서 지원하며,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①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립정착금 신청문의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설을 통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에 신청 ※가정위탁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로 직접 신청 가능 ③ 사용계획서 확인 및 심사 ④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자립정착금 입금
문의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ip 보호종료 후 아동 본인의 주거 공간 마련 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장 또는 가정위탁부모가 보호종료 아동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아동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참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양식

<table>
<tr><td colspan="6">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 rowspan="2">성명</td><td row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E-mail</td><td colspan="2"></td></tr>
<tr><td>은행명</td><td></td><td>계좌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자립업무
담당자</td><td>성명</td><td></td><td>핸드폰</td><td colspan="2"></td></tr>
<tr><td>소속</td><td></td><td>E-mail</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사 용 계 획 (세부내용 작성)</td></tr>
<tr><td colspan="3">사용용도</td><td>금액</td><td>사용기간</td><td>비고</td></tr>
<tr><td colspan="3"></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td><td></td><td></td><td></td></tr>
</table>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립정착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립업무담당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담당 시군구가 사용계획서를 수령 및 검토 후 자립정착금이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자립업무담당자에게 입금 일자를 공지하오니 아동이 정착금을 계획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바랍니다.

※ 위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법령상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은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립 전까지 저는 한 달 용돈이 3만원이었습니다.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을 나이였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 늘 참고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자립 시기에 맞춰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받게 되니 얼마나 쓰고 싶었겠어요? 저도 친구들처럼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었고, 늘 돈이 없어 얻어먹기만 하다 보니 돈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밥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퇴소했던 선배, 동기들의 소식을 들으며 조금씩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퇴소하자마자 자립정착금으로 중고자동차를 산 친구는 미숙한 운전 실력 때문에 몇 달 후 큰 사고로 자동차를 폐차하게 됐습니다. 이후 치료비를 지불하느라 오히려 더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립정착금을 받기 전,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빚이 생긴 친구는 자립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선배, 동기들의 모습을 보며 자립정착금은 정말 필요한 곳에만 계획적으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립을 하고 나면 모든 게 계획대로 가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저는 주로 주거비용으로 큰돈이 필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LH를 통해 집을 구했지만, 계약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100만원을 필요로 했고, 매달 LH에 내는 이자, 집주인에게 내는 관리비, 그리고 내가 사용한 만큼의 공과금까지 너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집에 필요한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의 가구비용까지…. 제가 만약 친구들처럼 자립정착금을 여행가고, 먹고 마시는 데에 다 탕진해버렸다면 아마 저는 자립 5년 차인 지금까지 아마 돈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자립정착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던 저는 100만원을 보증금으로, 100만원은 가구 구입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은 혹시 모를 일을 위해 저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저축을 지켜나가고 있고 이 돈은 LH 지원이 끝나는 날 제집을 얻는 데 사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립 선배 수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상 자립 초기에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오히려 경제적으로 풍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의 시기는 잠깐일 뿐입니다. 이 순간을 단순히 억제되어있던 소비 욕구를 해소시키는 시간이 아닌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꿀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자립을 경험한 선배로서, 여러분들의 자립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바람개비서포터즈 8기(남, 직장인)

Tip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되고 자립정착금을 받고 난 후, 사용용도에 대해 일부 아동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나, 부모 병원비나 선후배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작 본인이 그 돈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립정착금 수령 전에는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가족이나 친인척, 친한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립정착금은 반드시 본인의 자립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 디딤씨앗통장(CDA)

디딤씨앗통장 www.ncrc.or.kr

● 디딤씨앗통장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2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10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준비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아동</td><td>▶ 보호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생활시설
▶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아동(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신규 가입 가능)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 복귀 및 탈수급 가구 아동</td></tr>
<tr><td>지원기간</td><td>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이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 가능</td></tr>
<tr><td>지원내용</td><td>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본인명의 디딤씨앗통장에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추가적립액 : 기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추가 적립액은 국가 매칭 없음)</td></tr>
<tr><td>만기지급 및 조기인출</td><td>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rowspan="2">요건</th><th colspan="2">지급구분</th><th rowspan="2">비고</th></tr>
<tr><th>아동 적립금</th><th>정부 매칭금</th></tr>
<tr><td rowspan="2">만기지급</td><td>만기 해지</td><td>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td><td>○</td><td>○</td><td>만 24세 이후 제한없이 전액인출 가능</td></tr>
<tr><td>만기 후 적립 예금인출</td><td>만 18세 이상, 대학 생활비 지원</td><td>○</td><td>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시</td><td>아동적립금 한도 내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td></tr>
<tr><td colspan="2">조기 인출</td><td>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td><td>○</td><td>18세 이후,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시</td><td>아동적립금 한도 내 2회까지 가능</td></tr>
</table>
적립금 사용 용도 :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 의료, 결혼 등</td></tr>
<tr><td>문의</td><td>▶ 후원문의 :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1670-1834)
▶ 통장개설·해지문의 : 개별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td></tr>
</table>

※ 만 24세 이후에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하므로 해지하여 자립정착 비용으로 사용

참고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신청서 양식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

지원신청 아동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휴대폰		E-mail	
	주소	( )				
보호구분 (해당란에 한개만 √ 표시)	❑ 아동양육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가정위탁 ❑ 소년소녀가정 ❑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생활시설					
	❑ 기초생활수급가구					
후견인 보호자 등	후견인 (법정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		전화		휴대폰
		주소	( )			
	보호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		전화		휴대폰
		주소	( )			
지급구분	❑ 만기해지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조기인출 ❑ 중도해지(환수)					
사용 용도 (해당 란에 √ 표시하고, 세부내용을 작성할 것)	❑ 학자금 ❑ 자격취득 및 취업훈련 ❑ 창업자금 ❑ 주거마련 ❑ 의료비지원 ❑ 결혼지원 ❑ 기타					
	<사용용도 세부내용 요약> ※ 붙임 : 사업계획서, 청구서(사용처에 계좌입금) 등 관련서류					
입금정보	예금주명		은 행 명			
			계좌번호			
받은 전문상담 서비스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관련 사업계획서, 청구서(사용처에 계좌입금) 등

※ 신청 후 담당 시·군·구가 (주)신한은행에 지급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해당 일에 입금 계좌에 입금되며,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의 경우 입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급여항목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생계·의료·주거·교육)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보장, 필요시 개인단위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관련 문의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Tip 보다 많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근로소득 공제 확대가 시행되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1. 2019년부터 만 30세 미만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연락도 되지 않는 부모가 부양의무자로 되어있어 부모소득이나 재산으로 지원을 못 받았던 경우가 있었으나, 2019년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만 2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을 벌었을 경우 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50만원에서 30%를 공제한 후 남은 70%인 35만원을 소득으로 봅니다. 즉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을 벌어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35만원입니다. 1인 가구라 가정할 경우 생계급여는 2021년 기준 548,349원입니다. 548,349원-350,000원=198,349원. 이처럼 월 100만원의 소득이 생기더라도 198,349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0년부터 만 25세 이상인 경우에도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생계·주거·교육 급여)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50만원을 벌었을 경우 30%를 공제한 후 남은 70%인 35만원을 소득으로 봅니다. 즉 아르바이트로 50만원을 벌어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35만원입니다. 1인 가구라 가정할 경우 생계급여는 2021년 기준 528,349원입니다. 528,349원-350,000원=198,349원. 이처럼 월 50만원의 소득이 생기더라도 198,349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5 장애 연금·수당

보건복지부 www.mohw.go.kr

<table>
<tr><th>사업명</th><th>지원대상</th><th>지원내용</th></tr>
<tr><td>장애인연금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td><td>▶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202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22만원
부부가구 : 195.2만원</td><td>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계</th><th>기초</th><th>부가</th></tr>
<tr><td rowspan="2">기초
(생계·
의료급여)</td><td>18~64세</td><td>380,000</td><td>300,000</td><td>80,000</td></tr>
<tr><td>65세 이상</td><td>380,000</td><td></td><td>380,000</td></tr>
<tr><td rowspan="2">주거·
교육급여
차상위</td><td>18~64세</td><td>370,000</td><td>300,000</td><td>70,000</td></tr>
<tr><td>65세 이상</td><td>70,000</td><td></td><td>70,000</td></tr>
<tr><td rowspan="2">차상위
초과</td><td>18~64세</td><td>274,760</td><td>254,760</td><td>20,000</td></tr>
<tr><td>65세 이상</td><td>40,000</td><td></td><td>40,000</td></tr>
</table>
</td></tr>
<tr><td>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td><td>▶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td><td>▶ 장애수당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 1인당 월 2만원</td></tr>
</table>